

## 1. 개정이유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6조의3 개정 등)

-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서식 신설

나.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6조의2 개정 등)

- 전입신고서 내 추가된 통보서비스 신청서로도 통보서비스 신청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통보서비스 신청을 위한 입증서류 생략 가능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15호서식, 제15호의2서식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 주소 조회 결과와 지번 주소 조회 결과 동시 표기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 선택 기능 구현

라.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별지 제1호의17서식 신설 등)

-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원행정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8.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영 제15조제4항”을 “영 제15조2항에 따른 증표는 제1호의1 7서식에 따르고, 영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입신고”를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세대주(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혹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통보 서비스의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유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17서식 및 별지 제1호의1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게”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		
	휴대전화번호		
신청 대상 건물·시설 주소지	주소 (우 )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시 작성	
신청 서비스	전입신고	[ ]신청	
	세대주 변경	[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신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 ]신청	
	주소 변경 사실	[ ]신청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제20조제3항, 제41조의2 및 제47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소 변경,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를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5.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6.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의해 신청인의 주소가 정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그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7. 신청 대상 건물·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메시지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메시지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메시지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 정보는 신청한 서비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0. 모든 통보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본인이 신청·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별지 제1호의17서식]

(앞쪽)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발급번호  
성명  
증명서 유효기간

3 cm  
사진  
2.5cm

8 cm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후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6cm

60mm × 80mm [보존용지(1종) 120g/㎡]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이 증표는 사후확인 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 내용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
-------	--------------------	--------------------

개인 신청인	성명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법인·단체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표기 여부

표기함 [     ]

표기하지 않음 [     ]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열람: 1건 1회 300원 - 교부: 1통 4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자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한 자 (법인·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유의 사항

1.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한글 성명을 써야 합니다.
2. 법인·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습니다.
3.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7.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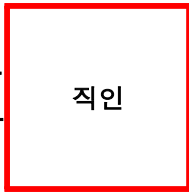
발급번호	발급일자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표기 여부	
표기됨 <input type="checkbox"/> / 표기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세대순번	세대주/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담당자 의견
--------

유의사항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을 통해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  
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세대주(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  
비스 혹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  
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  
다) :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에 통보 서비스의 신청에 동  
의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유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  
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  
다) :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

<신 설>

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6조의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